#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(이명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1588 발의연월일 : 2019. 9. .

발 의 자 : 이명녀, 신성봉, 김기환,

김지근, 권태호, 문희성,

노세영, 박경흠, 안영호,

박채연, 강혜경 (11명)

## 1. 제정이유

호스피스·완화의료 이용의 기반 조성 및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의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용어정의, 구청장의 책무 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나. 사업추진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O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
- O 인력교육과 육성, 프로그램 운영
- O 연명의료 인식개선,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등

다.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정(안 제5조)

라. 비밀유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근거법규: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제5조

4. 제정조례안 : "따로 붙임"

#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·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호스피스 · 완화의료"(이하 "호스피스"라 한다)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. 심리사회적.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.

가. 암

- 나. 후천성면역결핍증
- 다.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
- 라. 만성 간경화
- 마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
- 2. "임종과정"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,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.
- 3. "말기환자(末期患者)"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

### 4 (제220회-행정자치위제6차부록)

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.

- 4. "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"(이하 "웰다잉 문화조성"이라 한다)이 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사업추진 등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
  - 2.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  - 3. 인력교육과 육성에 관한 사항
  - 4.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  - 5.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  - 6.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

- 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제5조(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 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6조(비밀의 유지)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근거법규

- □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.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·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 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